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98
----------	-------

발의연월일 : 2018. 2. 20.

발의자 : 주호영 · 박명재 · 강석호
김현아 · 김명연 · 성일종
김석기 · 이채익 · 박덕흠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설계도서 등은 시설물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67조

제3항 제2호 삭제).

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5조(별 칙)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신 설></u></p> <p>1. (생 략)</p> <p>2. ~ 7. (생 략)</p>	<p>제65조(별 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67조(과태료)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 략)</p> <p>2.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3. ~ 19. (생 략)</p> <p>④ (생 략)</p>	<p>제67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 ~ 19.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